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

1. 관련

- 가.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(보험급여과-839호, 2022.2.11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(방대본-9435호, 2022.3.12.)
- 다.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(보험급여과-1263호, 2022.3.13.)

2. 동네 병·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실시 중인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와 관련하여,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-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(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, 보험급여과-839호)

* 특히, 3.14.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·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

-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**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**

- 또한,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(보험급여과-1263호, 2022.03.13.) 이후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**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불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**

불임 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시 후속절차 추가 질의답변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**송서현** 보건사무관 **조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2. 3. 22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1503 (2022. 3. 22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